

마이더스 신성장기업포커스 70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펀드코드: DT150]

투자위험등급 3등급 [다소 높은 위험]						마이더스에셋자산운용(주)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를 감안하여 3등급 으로 분류하였습니다.
1	2	3	4	5	6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 이며, 국내 주식, 특히 미래 성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성장주에 투자하는 주식형 모투자신탁(마이더스 신성장기업포커스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에 신탁재산의 70% 이상 80% 미만을 투자하고, 국내 우량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마이더스 우량채권 증권 모투자신탁(채권)에 신탁재산의 30% 이하를 투자하여 가격변동위험, 주식운용 전략으로 인한 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마이더스 신성장기업포커스 70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 증권 자투자신탁(주식)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 특히 미래 성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성장주에 주로 투자하는 마이더스 신성장기업포커스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에 신탁재산의 70% 이상 80% 미만을 투자하고, 국내 우량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마이더스 우량채권 증권 모투자신탁(채권)에 신탁재산의 30% 이하를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이 투자신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0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의6에 따른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으로서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증권시장 상장주식에 투자신탁재산의 40% 이상을 투자하며, 그 비율은 주식형 모투자신탁의 해당 주식 보유비율에 이 투자신탁의 주식형 모투자신탁에의 투자 비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 이 투자신탁은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 91 조의 20 및 동법 시행령 제 93 조의 6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시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p>분류</p> 투자신탁, 증권(주식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추가납입가능), 종류형, 모자형																																																																	
투자비용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클래스종류</th> <th colspan="5">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총보수 및 비용 (단위: %)</th> <th colspan="5">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 (단위: 천원)</th> </tr> <tr> <th>판매 수수료</th> <th>총보수</th> <th>판매 보수</th> <th>동종유형 총보수</th> <th>합성 총 보수·비용</th> <th>1년</th> <th>2년</th> <th>3년</th> <th>5년</th> <th>10년</th> </tr> </thead> <tbody> <tr> <td>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소득공제(A)</td> <td>납입금액의 1.0% 이내</td> <td>1.150</td> <td>0.600</td> <td>1.370</td> <td>1.153</td> <td>216</td> <td>339</td> <td>468</td> <td>746</td> <td>1,571</td> </tr> <tr> <td>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형-소득공제(C)</td> <td>없음</td> <td>1.500</td> <td>0.950</td> <td>1.570</td> <td>1.500</td> <td>154</td> <td>315</td> <td>485</td> <td>850</td> <td>1,934</td> </tr> <tr> <td>수수료선취-온라인형-소득공제(Ae)</td> <td>납입금액의 0.5% 이내</td> <td>0.850</td> <td>0.300</td> <td>1.020</td> <td>0.853</td> <td>137</td> <td>228</td> <td>324</td> <td>531</td> <td>1,144</td> </tr> <tr> <td>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소득공제(Ce)</td> <td>없음</td> <td>1.050</td> <td>0.500</td> <td>1.180</td> <td>1.053</td> <td>108</td> <td>221</td> <td>340</td> <td>596</td> <td>1,358</td> </tr> </tbody> </table>	클래스종류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총보수 및 비용 (단위: %)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 (단위: 천원)					판매 수수료	총보수	판매 보수	동종유형 총보수	합성 총 보수·비용	1년	2년	3년	5년	10년	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소득공제(A)	납입금액의 1.0% 이내	1.150	0.600	1.370	1.153	216	339	468	746	1,57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형-소득공제(C)	없음	1.500	0.950	1.570	1.500	154	315	485	850	1,934	수수료선취-온라인형-소득공제(Ae)	납입금액의 0.5% 이내	0.850	0.300	1.020	0.853	137	228	324	531	1,144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소득공제(Ce)	없음	1.050	0.500	1.180	1.053	108	221	340	596	1,358
	클래스종류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총보수 및 비용 (단위: %)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 (단위: 천원)																																																										
판매 수수료		총보수	판매 보수	동종유형 총보수	합성 총 보수·비용	1년	2년	3년	5년	10년																																																								
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소득공제(A)	납입금액의 1.0% 이내	1.150	0.600	1.370	1.153	216	339	468	746	1,57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형-소득공제(C)	없음	1.500	0.950	1.570	1.500	154	315	485	850	1,934																																																								
수수료선취-온라인형-소득공제(Ae)	납입금액의 0.5% 이내	0.850	0.300	1.020	0.853	137	228	324	531	1,144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소득공제(Ce)	없음	1.050	0.500	1.180	1.053	108	221	340	596	1,358																																																								
<p>(주1)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비용(판매수수료 + 총보수비용(피투자펀드 보수·비용 포함))을 의미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였습니다.</p> <p>(주2) 종류 A형과 종류 C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 8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이며, 종류 Ae형과 종류 Ce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 4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이나, 추가납입 및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p> <p>(주3)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34페이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p>(주4)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하며, 2024년 2월 29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p>																																																																		

종류	최초설정일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2023/03/24~ 2024/03/23	2022/03/24~ 2024/03/23	2021/03/24~ 2024/03/23	2019/03/24~ 2024/03/23	
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소득공제(A) (%)	2023-03-31	-	-	-	-	5.27
비교지수(%)	2023-03-31	-	-	-	-	9.99
수익률 변동성(%)	2023-03-31	-	-	-	-	11.33

(주1) 비교지수: KOSPI*70%+[KIS 중단지수(1-2Y)*55% + KIS 중기지수(2-3Y)*40% + Call 지수*5%]*30%
(비교지수 성과에는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음)
(주2)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기간 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집합투자기구 총비용 지급 후 해당기간 동안의 세전 평균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3)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펀드의 연환산 중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주식형)(%)				운용경력 년수
			집합투자 기구 수	운용규모 (억원)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오화영	1985	책임-주식 (부장)	6개	1,887	5.13	-9.84	12.85	1.15	10년 9개월
오남훈	1978	부책임-주식 (수석)	15개	3,935	10.88	-5.47			15년 6개월
기민수	1980	책임-채권 (본부장)	35개	44,068	10.40	15.44			12년 11개월
김민수	1982	부책임-채권 (부장)	24개	24,482	10.40	15.44			12년 3개월

(주1)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4)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 가치의 보증을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어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시면 귀하의 집합투자증권 매입 이전까지 교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 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법시행령 제81조의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기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0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의6에 따른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으로서, 해당 법령에서 정한 가입자격을 갖춘 투자자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환매가 허용되지 않으며 가입 후 3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당 계약을 해지·양도하거나 원금·이자·배당 등의 인출 시 해당 저축에 납입한 총 누계액에 일정비율(100분의 6)을 곱한 금액을 추징(지방소득세 포함시 추징세액 증가)하니 투자결정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투자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원본손실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수익자가 부담합니다. 따라서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며 또한 이 집합투자기구는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주식등 가격변동위험 (종목위험)	개별주식은 해당기업의 수익성 및 성장성의 변화에 따라 주식의 가격이 변동되므로 이에 따라 이익 혹은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항상 있습니다. 회사는 투자대상 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거나, 기업의 가치보다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낮다고 판단할 경우에 해당 주식을 매수하지만, 회사의 판단이 항상 정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투자손실의 위험이 항상 존재합니다.	
	투자신탁의 주식운용 전략으로 인한 위험	주식 투자시 잠재성장률과 중장기 실적개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주로 투자하므로 투자신탁의 운용실적이 주식시장의 움직임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금리변동위험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권가격의 하락으로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의 가격은 채권의 만기 이전에 발생하는 이자수령액이 현재의 채권시장 이자율과 같은 이자율로 재투자된다는 가정 하에 계산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채권시장 이자율이 항상 변하고 있어, 만일 이자 수령 시의 시장이자율이 당초의 시장이자율보다 낮아질 경우 채권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이 예상수익보다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과세제도 변경 위험	투자에 따른 손익에 대한 세금부과방법이나 기준은 정부의 정책적 판단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특히 투자자의 지위에 따라 각기 다른 과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에 관한 사항은 투자 자본인의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시어 반드시 세무전문가의 조언 등 추가적인 확인을 권장합니다.	
	과세위험(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이 투자신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0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의6에 따른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으로서, 가입 후3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당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당 저축으로부터 원금·이자·배당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출 혹은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해당 저축에 납입한 총 누계액에 일정 비율(100분의6)을 곱한 금액이 추징될 수 있으니 투자결정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입 방법	오후 3시 30분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2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오후 3시 30분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환매 방법	오후 3시 30분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청구일로부터 제2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제4영업일(D+3)에 관련 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 오후 3시 30분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제4영업일(D+3)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
환매수수료	없음		
기준가	산정방법	$\text{당일 기준가격} = (\text{전일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 \text{부채총액}) / \text{전일 집합투자기구 총 좌수} - 1,000\text{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공시장소	판매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midasset.com)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dis.kofia.or.kr)에 게시합니다.	

과세	구분	과세의 주요내용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입니다.	
	수익자	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p>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0(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의6(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혜택을 받는 집합투자증권입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내용: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이 장기펀드에 가입 시 납입금액(연 600만원 한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 가입대상: 19세 이상 34세 이하(병역 이행 시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복무기관(최대 6년) 제외) - 소득요건: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 - 가입기간: 2023년 12월 31일까지(※ 이 투자신탁의 경우 일반적으로 가입신청 이후 2영업일 매수하므로 실제로 2023년 12월 28일(목) 오후 3시 30분 이전까지 신규신청(자금납입)한 경우를 말합니다.) - 투자기간: 최초가입일로부터 3년 이상 5년 이하일 것 - 가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해지한 경우(원금·이자·배당·주식 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출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저축에 납입한 총 누계액에 100분의 6을 곱한 금액을 추징하니 투자 결정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0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의6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기 저축에 대한 과세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전환절차 및 방법	해당사항 없음		
집합투자업자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주) (대표번호: 02-3787-3500 / 인터넷 홈페이지: www.midasasset.com)		
모집기간	효력발생 이후 계속 모집 가능	모집·매출 총액	10조 좌
효력발생일	2024년 04월 26일	존속 기간	정해진 신탁계약 기간은 없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www.midasasset.com),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 참조		
참조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42페이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집합투자기구의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수수료	<p>수수료선취(A)</p> <p>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 8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2년 8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온라인형(Ae, Ce)의 경우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 4개월</p> <p>수수료미징구(C)</p> <p>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 8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2년 8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온라인형(Ae, Ce)의 경우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 4개월</p>	
	판매경로	온라인(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온라인슈퍼(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기타	무권유저비용(G)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기구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적인 창구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보다 낮은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소득공제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권신고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midasasset.com)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midasasset.com) • 수시공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midasasset.com) 	